이직확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제118조제1항제3호에 의해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「이직확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」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17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인

1. 건　　명: 이직확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
2. 근　　거: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, 제118조제1항제3호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성 명)	사업장 관리번호 (대표자 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공시송달 사유
주식회사 디*로지스 (이*철)	714-88-01538-0 (80. 2. 20.)	경기 용인시 처인구 (이하 생략)	이직확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	· 처분 사전통지서 · 의견제출서	동 서류를 송달(2026. 11. 9.)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(2026. 11. 13.)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함

4. 공 고 기 간: 2026. 11. 17. ~ 2026. 12. 01.(15일간)
5. 문　　의: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복지+센터 송현아 주무관(☎ 031-289-2203)